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 확대〉

■ 김영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515호)

2024.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동 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주요내용	2
2. 검토의견	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영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7. 9.
3. 회 부 일 : 2024. 7.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용을 제한하고, 검사 권한을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부여하고 있음. 국유철도는 사법권이 있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검사권한을 위임하여 검사에서 처벌까지 이어지고 있으나, 도시철도의 경우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검사를 진행해도 사법처벌에 대한 권한이 없어 일반경찰에게 인계하고 있음.

도시철도 종사자의 경우 단속은 철도경찰이, 처벌은 일반경찰이 담당하는 이원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단속→위반자 처벌→위반자 자격취소→재발방지’ 절차의 유기적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 집행력과 재발방지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음.

이에 철도경찰에게 도시철도 종사자의 「철도안전법」 제41조 위반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찰의 불필요한 수사력 낭비를 방지하는 한편, 도시철도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6조제9호).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철도 특별사법경찰관 직무범위에 “소속 관서 관할 구역인 도시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철도안전법」 제41조¹⁾를 위반한 범죄”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9호).

현행	개정안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1. ~ 8. (생략) 9. 제5조제11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u>소속 관서 관할 구역인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그 소속 관서 역 구내 및 열차 안에서의 범죄</u> <u><신설></u>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 ----- ----- ----- -----. 1. ~ 8. (현행과 같음) 9. ----- ----- <u>다음 각 목에</u> ----- -- <u>범죄</u> 가. <u>소속 관서 관할 구역인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철도안전법」</u>

현행	개정안
<u><신 설></u> 10. ~ 50. (생략)	<u>에 규정된 범죄와 그 소속 관서 역 구내 및 열차 안에서의 범죄</u> <u>나. 소속 관서 관할 구역인 도시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철도안전법」 제41조를 위반한 범죄</u> 10. ~ 50. (현행과 같음)

1) 제41조(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종사자(실무수습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는 술(「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운전업무종사자
2. 관제업무종사자
3. 여객승무원
4. 작업책임자
5. 철도운행안전관리자

6.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 및 조작관 등을 취급하거나 열차의 조성(組成: 철도차량을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작업을 말한다)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7.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의 위탁을 받은 법인이 건설·운영하는 도시철도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제42조, 제45조, 제46조 및 제81조제2항에서 같다)는 철도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에 따른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사용하였는지 확인 또는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철도종사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검토의견

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운영 현황

□ 현행법²⁾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철도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이하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이들의 직무범위를 “소속 관서 관할 구역인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그 소속 관서 역 구내 및 열차 안에서의 범죄”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1963년 교통부 산하 철도국으로 출범한 이후 수차례 조직 개편을 거쳐 2013년부터 국토교통부 산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음. 2024. 9. 13. 현재 1개 본대, 4개 지방철도경찰대, 26개 철도경찰센터로 구성된 조직에 504명의 정원을 두고 있음.

2)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11.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철도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9. 제5조제11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인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그 소속 관서 역 구내 및 열차 안에서의 범죄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조직 현황>

2024. 9. 13.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 현재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①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른 특별사법경찰 직무 및 철도사고 수사 ② 철도보안검색, 폭발물 탐지견 운영 등 철도테러 예방활동 ③ 경범죄처벌법 위반자에 대한 통고처분, 철도안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처분을 행할 뿐만 아니라 ④ 철도종사자(도시철도를 포함한다) 준수사항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도 실시³⁾하고 있음.

3) 「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 제4조(직무범위) 철도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속관서 관할구역인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소속관서 역구내 및 열차 안에서의 범죄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2. 「경범죄처벌법」 위반자 통고처분
3. 철도보안검색 및 테러 예방
4.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운용실적을 살펴보면, 형사범죄에 대하여는 최근 5년간 12,410건의 범죄사실 중 11,392건을 검거하였으며(검거율 92%), 행정범에 대하여는 최근 5년간 35,731건의 단속 실적을 보임.

<최근 5년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형사범 검거 현황>

(단위 : 건)

연도	구분	범죄유형					처리결과	
		계	절도	폭력	성폭력	철도안전법 위반*	기타**	검거(건)
	계	12,410	1,693	2,274	4,134	888	3,421	11,392
	2019	2,459	364	389	936	190	580	2,312
	2020	2,198	318	368	723	163	626	1,994
	2021	2,136	297	407	661	166	605	1,896
	2022	2,891	321	535	981	212	842	2,684
	2023	2,726	393	575	833	157	768	2,506

* 철도안전법 위반 : 종사자 직무집행방해, 여객열차내 금지행위, 열차투석, 음주 등

** 기타 : 손괴, 공무방해, 횡령, 사기 등(출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자료 : 국토교통부

<최근 5년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행정범 단속 현황>

(단위 : 건)

연도	구분	계	소란행위	불안감 조성	무단출입	무허가 물품판매	흡연	기타
		계	소란행위	불안감 조성	무단출입	무허가 물품판매	흡연	기타
	계	35,731	14,931	2,886	1,673	3,245	2,160	10,836
	2019	20,106	9,939	1,483	857	2,109	1,075	4,643
	2020	6,794	2,644	644	344	759	405	1,998
	2021	4,556	1,441	385	276	218	325	1,911
	2022	2,502	566	257	154	108	190	1,227
	2023	1,773	341	117	42	51	165	1,057

* 기타 : 철도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열차승강장 비상정지 버튼 작동, 쓰레기 투기 등

자료 : 국토교통부

5. 철도종사자(도시철도 종사자를 포함한다) 준수사항 위반여부 조사 및 과태료 부과·징수
6. 철도시설 및 열차 내 질서위반행위자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7. 가출인 발견·보호 및 보호자 인계 등
8. 특별동차 등 운행에 따른 경비

- 나아가 최근 5년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철도종사자 음주운전 단속 현황을 보면, 1,314회에 걸쳐 6,145명에 대하여 음주 측정을 하여 3명을 적발하였음.

<최근 5년간 철도종사자 음주단속 현황>

(기준: '24.6.30.)

연도\구분	측정횟수(회)	측정인원(명)	적발인원(명)
계	1,314	6,145	3
2019	413	2,361	1
2020	129	640	—
2021	99	358	1
2022	280	1,228	1
2023	266	1,071	—
2024	127	487	—

자료 : 국토교통부(도시철도 종사자 포함)

* 코로나-19 팬데믹('20~'23)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 위해 일시적 음주측정 감소 후 '24년 음주측정 확대 시행 중

나. 개정안에 따른 대상 범죄 개관

□ 개정안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게 추가하려는 직무범위는 “도시철도 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철도안전법」 제41조4)를 위반한 범죄”로서,

○ 같은 조 제1항은 철도종사자에게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2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 또는 약물 사용 여부를 확인·검사할 수 있도록 하되 철도종사자에게 이를 거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4) 제41조(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종사자(실무수습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는 술(「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운전업무종사자
2. 관제업무종사자
3. 여객승무원
4. 작업책임자
5. 철도운행안전관리자
6.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 및 조작판 등을 취급하거나 열차의 조성(組成: 철도 차량을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작업을 말한다)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7.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의 위탁을 받은 법인이 건설·운영하는 도시철도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제42조, 제45조, 제46조 및 제82조제6항에서 같다)는 철도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에 따른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사용하였는지 확인 또는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철도종사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 결과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였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술: 혈중 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철도종사자는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
2. 약물: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또한 동법 제79조⁵⁾에 따라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한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제41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확인 또는 검사에 불응한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직무범위 확대의 적절성

- 「철도안전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으로서 원칙적으로 국유철도를 전제⁶⁾하고 있으나, 「도시철도법」 제4조⁷⁾에 따라 도시철도의 안전에 관하여는 「철도안전법」이 적용되는 체계임.

5) 제7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5. 제41조제2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에 불응한 자

6) 「철도안전법」상 철도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하는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제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국유철도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이므로 「철도안전법」상의 철도 역시 국유철도를 의미함.

※ 「철도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도”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2장의 규정은 모든 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가 및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하 “고속철도건설공단”이라 한다)이 소유·건설·운영 또는 관리하는 철도

2. 제20조제3항에 따라 설립되는 국가철도공단 및 제21조제3항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철도공사가 소유·건설·운영 또는 관리하는 철도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철도”라 함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7)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철도의 안전에 관하여는 「철도안전법」을 적용한다.

□ 한편,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철도안전법」 제77조제1항⁸⁾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제1호⁹⁾에 따라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사용에 대한 확인·검사권한을 부여받고 있는바,

○ 이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국유철도와 도시철도 종사자의 「철도안전법」 제41조 위반행위(이하 “주취업무 또는 확인·검사 불응”)에 대한 확인·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법 제6조제9호¹⁰⁾는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직무범위를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는바, 국유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철도종사자가 주취업무를 하거나 음주·약물사용에 대한 확인·검사에 불응하는 경우 즉시 수사로의 전환이 가능한 반면,

○ “도시철도 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확인·검사 이후 일반사법경찰관에게 수사 인계를 하고 있음.

8) 제7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9) 제62조(권한의 위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에 따른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

10)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9. 제5조제11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인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그 소속 관서 역 구내 및 열차 안에서의 범죄

<현행법상 「철도안전법」 관련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권한>

구 분	확인·검사권한	수사권
국유철도 (예: KTX)	있음	있음
도시철도 (예: 서울시 지하철)	있음	<u>없음</u> ⇒ 개정안은 이에 대해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 이에 개정안은 소속 관서 관할 구역인 도시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주취업무 또는 확인·검사 불응 범죄에 대하여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게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확인·검사권한과 수사권한의 일원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게 도시철도 종사자에 대한 주취업무 또는 확인·검사 불응 범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수사의 신속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현행법 하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도시철도 종사자가 음주 또는 약물 사용 확인·검사에 불응하거나 음주측정 등을 통해 주취업무정황을 인식하더라도 이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하여 일반사법경찰관 등에게 사건을 이첩하고 있는바, 경찰 신고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됨에 따라 음주측정이 곤란해지는 경우가 발생하여 혐의자의 신병확보 또는 증거수집이 어렵고 경찰의 수사력 등 행정력이 낭비될 우려가 있음.

- 또한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이미 국유철도시설과 그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철도안전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음.
- 따라서 철도안전 관련 범죄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철도특별사법경찰 대에게 도시철도시설 및 그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주취업무 또는 확인·검사 불응 범죄에 대하여 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확인·검사와 수사가 동일 주체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진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문 의 처
02)6788-5070

[참고자료 1] 특별사법경찰제도 개관

- 현행법상 사법경찰은 크게 ① 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에 소속되어 범죄에 대한 일반적 수사권을 행사하는 일반사법경찰과 ②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속되어 특정한 영역의 범죄에 대하여만 수사권을 행사하는 특별사법경찰 두 종류로 구분되고 있음.

- 특별사법경찰은 ① 전문적인 업무 영역에 종사하는 행정공무원 등에게 관련된 분야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전문지식을 범죄 수사에 활용할 수 있고, ② 시·공간적인 제약으로 일반사법경찰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 범죄 현장 접근성이 높은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여 신속한 범죄 수사를 도모할 수 있는 등의 취지에서 1956년 도입되었고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 2022. 12. 31. 기준 중앙행정기관에서 지명된 특별사법경찰이 약 14,000명,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명된 특별사법경찰이 약 6,300명에 이르고 있음.

[참고자료 2] 기관별·분야별 특별사법경찰 지명현황(2022.12.31.기준)

자료제공: 법무부 형사기획과

1. 중앙행정기관별 특별사법경찰 지명현황

연번	기관명	업무분야	지명인원
1	기획재정부(관세청)	관세법 등 위반 범죄	512
2	기획재정부(국세청 ¹¹⁾)	조세 관련 범죄	5,104
3	법무부(교소도등)	교도소, 구치소 등 내에서 발생한 범죄	1,298
4	국방부(기무사등)	군용물, 군사기밀보호법, 병역법 등 위반 범죄	247
5	병무청	병역법 위반 범죄	39
6	소방청	소방기본법 등 위반 범죄	2,213
7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위반 범죄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범죄	12
8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보호과)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범죄	24
9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허위 표시 등 위반 범죄	1,061
10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사업법 위반 범죄	43
1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식품방역법 위반 범죄	209
12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 위반 범죄	-
13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	산림, 임산물, 수렵 관련 범죄	175
14	산업통상자원부 (광산안전사무소)	광산보안법위반범죄	9
15	산업통상자원부(특허청)	부정경쟁행위, 상표법 등 위반 범죄	40
16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과)	청소년보호법위반 범죄	6
17	환경부(국립공원공단)	환경 관련 위반 범죄 경범죄 처벌법 위반 범죄	602
18	환경부(환경청)	환경 관련 위반 범죄	72

연번	기관명	업무분야	지명인원
19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	787
20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도로법 등 위반 범죄	76
21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459
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법 등 위반 범죄	145
23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등 위반 범죄	173
24	해양수산부(어업관리단)	어업자원보호법 위반 범죄	504
25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 안전규제 범죄	24
26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관리법 등 위반 범죄	24
2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약사, 보건범죄 위반 범죄	34
28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및 의료법 등 위반 범죄	10
29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설비 및 방송통신설비 위반 범죄	23
30	대통령경호처	경호업무 수행 관련 범죄	24
31	행정안전부	안전분야 관련 범죄	3
32	환경부	환경 관련 위반 범죄	12
33	국토교통부	교통 등 불법행위 조사, 단속	-
34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범죄	26
35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죄	5
합 계			13,995

- 11) 기획재정부(국세청) :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해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조사 공무원’으로서 조세범칙 혐의 유무를 입증하기 위해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혐의자 등에 대해 심문·압수·수색·범칙 처분을 하는 등 사실상 특사경에 준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지명절차도 법무부 예규인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고 있어 관례적으로 특사경 인원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음

2. 지방자치단체별 특별사법경찰 지명현황

연번	기관명	업무분야	지명인원
1	서울특별시	식품, 공중위생 등 관련 범죄	415
2	부산광역시	〃	364
3	인천광역시	〃	374
4	대구광역시	〃	167
5	대전광역시	〃	206
6	광주광역시	〃	178
7	울산광역시	〃	253
8	세종특별자치시	〃	45
9	경기도	〃	844
10	경상남도	〃	354
11	경상북도	〃	661
12	충청남도	〃	596
13	충청북도	〃	448
14	전라남도	〃	534
15	전라북도	〃	318
16	강원도	〃	509
17	제주특별자치도	〃	36
합 계			6,302